

충청북도 6.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창호

충청북도 6.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연구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7년 9월 29일
- 회부일자 : 2017년 9월 29일

3. 개정이유

- 6.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과 관련해 노근리 평화공원에 대한 충청북도의 사업 지원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- 지원기준에 “「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사항”을 포함 (안 제4조)
- 지원사업에 “노근리 평화공원의 추진사업”을 포함 (안 제5조)

5. 검토의견

- 금번 개정조례안은 6.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과 관련해 노근리 평화공원에 대한 충청북도의 사업 지원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,
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- 첫째, 안 제4조의 지원기준에 “「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사항”을 포함시켰으며,
 - 둘째, 안 제5조 지원사업에 “노근리 평화공원의 추진사업”을 포함시켰음.

- 금번 개정조례안은 1950년 7월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철교밑에서 미군이 한국인 양민 300여명을 학살한 노근리양민학살사건에 대한 각종 위령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충청북도의 지원(2016년 5천만원 1회 지원)이 공식적으로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충청북도의 6.25전쟁 희생자 위령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됨.

붙임 : 충청북도 6.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